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수 신 : 2026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특화문화사업 선정 작은도서관(27개관)

제 목 : 2026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 - 특화문화사업 보조금 교부

1. 2026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특화문화사업에 선정된 귀 단체에 붙임과 같이 사업비를 교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 이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특화문화사업

나. 사업비(교부결정액) 총액 : 금56,000,000원

다. 기교부액 : 금0원

라. 금회교부액 : 금54,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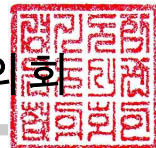
마. 교부잔액 : 금2,000,000원

바. 금회교부처 : 27개 특화문화사업 선정 작은도서관

자. 교부방법 : 계좌입금

붙 임: 1. 2026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특화문화사업 보조금 교부금 통지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담당자 송명화

문서번호: 경도협 2026-013 (2026.06.17.)

우10809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번길 42-19

전화번호 (031)953-8779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장 문후남

| <http://cafe.daum.net/kglili>

| [smalllibrary\\_gg@daum.net](mailto:smalllibrary_gg@daum.net)

## 2026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특화문화사업 보조금 교부금 통지

순번	지역	도서관명	금액
1	파주	내청년카페,작은도서관	2,000,000
2	용인	공감도서관	2,000,000
3	의정부	책읽는행복도서관	2,000,000
4	성남	중원청소년작은도서관	2,000,000
5	화성	책누리작은도서관	2,000,000
6	광주	꿈자람작은도서관	2,000,000
7	의왕	글누리도서관	2,000,000
8	여주	토닥토닥 그림책도서관	2,000,000
9	부천	여월휴먼시아작은도서관	2,000,000
10	안산	꽃우물작은도서관	2,000,000
11	평택	사랑나무작은도서관	2,000,000
12	부천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2,000,000
13	고양	아리술작은도서관	2,000,000
14	화성	생각마루작은도서관	2,000,000
15	김포	작은도서관 다락	2,000,000
16	고양	작은도서관 웃는고래	2,000,000
17	파주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2,000,000
18	고양	가원시니어도서관	2,000,000
19	성남	책이랑 도서관	2,000,000
20	부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2,000,000
21	고양	수피움작은도서관	2,000,000
22	군포	작은도서관 버드나무에부는바람	2,000,000
23	안산	이야기숲어린이작은도서관	2,000,000
24	오산	라꿈작은도서관	2,000,000
25	포천	태봉작은도서관	2,000,000
26	광주	언덕위작은도서관	2,000,000
27	부천	언덕위광장작은도서관	2,000,000

##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을 준수하고, 2026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특화문화사업 예산편성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보조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4.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 사업비에 자부담이 포함되었을 경우는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장에게 11월 20일(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同 사업 추진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보조금 등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1년 이상) 배제되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